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2. 9. 6  
행 정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8월 2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2002년 8월 28일 회부

다. 상 정 일 자 : 제90회(제1차정례회) 제4차 위원회(2002년 9월 6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김용선)

가. 개정이유

-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에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정

나. 주요내용

-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세이상 200인을 500인으로 한다.(안 제2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홍수)

본 조례 개정안 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의 감사청구연서 주민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되나 반대로 주민의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본 조례의 취지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.

## 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요지

- 본 조례 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는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가 너무 적을 경우 본 조례의 취지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함.

나. 수정주요골자

- (안) 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의 “200인”을 “500인”으로 수정함.

## 5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감사청구에관한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(안) 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의 “200인”을 “500인”으로 수정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